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4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4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 19.(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박노선)

가. 제안이유

-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주민의 청결유지책임 제 도입을 위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·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,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·이행명령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로써 설정하고, 사안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8조의3 제1항)
- 쓰레기 불법투기·소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증거력 확보와 사실확인 및 소재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행위 적발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정함.
(안 제18조의3 제2항)
- 구청장이 청결유지조치를 명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5 제1항)

-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대청소 미 실시, 쓰레기 방치, 무단소각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(안 제18조의5 제2항)
- 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 (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차단 생활환경과 깨끗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,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제 부여 및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위 불법행위 적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는 대민 준법의식 고취와 환경보존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
- 또한 환경부 청결유지 시행지침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조례를 정하여 청결유지토록 명시 규정되어 있고,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분리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개정 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